

2022년 제8회(재공고) 부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2022. 1. 21.)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2605호, 2022. 4. 27.)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05호, 2022. 4. 27.)
-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규칙(부산광역시 규칙 제4078호, 2022. 2. 16.)

2.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임용등급	인원	비고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예방 및 조사 총괄	성비위근절추진단	행정 5급 (일반임기제)	1명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정책과	시간선택제 '나'급 (주 35시간)	1명	
임상심리치료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	아동보호종합센터	시간선택제 '다'급 (주 35시간)	1명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5년 이내 연장 가능(사업 계속 시)

3. 임용의 필요성

임용분야	필요성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예방 및 조사 총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예방 및 조사 총괄(사건조사,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처벌 강화,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필요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 제87조의 2에 따라 건축안전 업무의 체계적, 전문적 수행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에 따라 건축구조 전문가(1명)를 필수 전문인력으로 배치 필요
임상심리치료 (거점 아동보호 전문기관 심리지원)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인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팀 운영 사업' 시행에 따라 지역내 고난도 사례 심리서비스, 교육 운영 등 거점 심리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할 심리치료 전문인력 필요

4. 임용분야 주요업무

임용분야	주요업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예방 및 조사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괴롭힘 예방 및 조사업무 총괄 -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 구축 관리(교육, 모니터링 등) - 공정·엄정한 사건 대응 - 강력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 확립 등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구조, 건축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인·허가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점검 수행 ○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건축물 유지 및 안전관리 지원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 수행
임상심리치료 (거점 아동보호 전문기관 심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고난도 학대피해아동, 가족, 행위자 심리검사·상담·치료 ○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아동 심리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시설내 심리치료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 부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시설 등 개인·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 콘텐츠 기획 지원 ○ 지역사회 심리서비스 관련 현황 조사 및 자원 개발·연계 지원 ○ 기타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사업 운영 관련 사항

5.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분야별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격요건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예방 및 조사 총괄	행정5급 (일반임기제)	<p>※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경력인정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및 괴롭힘 피해신고 상담·조사 등 임용 분야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p> <p>▶ 우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지역건축 안전센터 (건축구조, 건축시공)	시간선택제 '나'급 (주35시간)	<p>※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고급기술사 이상 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p>▶ 경력인정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연구소, 기업체 등의 임용 분야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p> <p>※ (관련분야) 건축구조 관련 근무경력</p> <p>▶ 우대사항: 건설분야 안전점검 전문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p>
임상심리치료 (거점 아동보호 전문기관 심리지원)	시간선택제 '다'급 (주35시간)	<p>※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또는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p>▶ 경력인정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심리검사, 치료, 상담 등 임용 분야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p> <p>▶ 우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전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후 임용 분야 주요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발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심사항목 배점기준	일반 전형요소			전문분야별 전형요소				
	소계	자 기 소개서	직 무 계획서	소계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분야 전공관련	직무관련 자격종 등 능력도	직무관련 연구개발 등 성과물
100점	30	15	15	70	30	15	15	10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개별면접
- 평정요소 및 평가방식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5개 평정요소 마다 상, 중, 하로 평가
-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불합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응시자 중 평정 성적이 가장 높은 순으로 임용 인원수만큼 합격자로 결정

7. 보수 수준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5급(상당)	-	62,686천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6급(상당)	77,932천원	51,928천원	
7급(상당)	63,693천원	45,237천원	
8급(상당)	55,877천원	39,859천원	
9급(상당)	49,202천원	-	

※ 상기 보수액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액임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시험 일정(예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2. 9. 28.(수)	'22. 10. 12.(수) ~ 10. 14.(금)	서류전형	'22. 10. 19.(수) ~ 10. 21.(금)	시청	'22. 10. 28.(금)
		면접시험	'22. 11. 10.(목) ~ 11. 11.(금)	시청	'22. 11. 16.(수)

※ 시험일, 면접장소,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시 홈페이지 게시(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처: 시 인사과 인재채용팀(시청 10층)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제외),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편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10.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 응시수수료: 5급(상당) 10,000원, 6~7급(상당) 7,000원, 8~9급(상당) 5,000원
 - 부산광역시 수입증지(시청 2층 통합민원과에서 구입) 날인
 - 우편 제출 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 1부
 -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⑩ 증명사진 1매 : 3.5×4.5cm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①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사·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본인작성 증명 성과물 각 1부
 -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 ④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A4 3매 이내)
- ⑤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단, 어학능력은 2년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최종합격 시 사실 공증
-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기 바람
- 응시원서는 1개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 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① 경력기간 ⇒ ② 자격증 유무 및 점수 순 ⇒ ③ 성과물 유무

-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은 시 홈페이지(busan.go.kr)에 게시
-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응시 관련: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051-888-1975)
 - 직무 관련

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연락처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예방 및 조사 총괄	성비위근절추진단	051-888-1582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정책과	051-888-4502
임상심리치료(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지원)	아동보호종합센터	051-240-6342

붙임 1. 직무기술서 각 1부

2. 응시자 제출서류 서식 1부. 끝.